

선박이력기록부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부 신청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교부		처리기간
		교부 7일 재교부 5일
신청인	① 회사명	② 대표자 성명
	③ 주소	
	④ 전화번호	⑤ 팩스번호
선박	⑥ 선박명	⑦ 총톤수
	⑧ 선박번호	⑨ 선박 식별번호 (IMO No.)
	⑩ 선박회사 식별번호	⑫ 이전 국적(국적 변경 시)
	⑪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	
⑬ 변경 내용		
⑭ 변경 사유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(재교부)을 신청합니다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 년 월 일 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</div>		
구비서류: 뒤쪽 참조		수수료
		없음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</div>		

(뒤쪽)

구비서류	제출서류	확인 사항
	<p>1. 교부신청의 경우</p> <p>가. 「선박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사본 ※ 신청인이 앞쪽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.</p> <p>나. 「선박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</p> <p>다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</p> <p>라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</p> <p>마.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(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2. 재교부신청의 경우</p> <p>가.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</p> <p>1)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</p> <p>2) 선박이력기록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. 다만,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,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나.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</p> <p>1) 선박이력기록부 사본</p> <p>2)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</p>	선박국적증서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